

# **국내외에서의 PL법 판례동향**

**손 수 진**

**(공주대학교 교수)**



# 국내외에서의 제조물책임법 판례동향

손수진  
공주대학교

## I. 서 론

우리나라의 제조물책임법은 1999년 12월 16일 국회의결을 거쳐 2000년 1월 12일 공포되었으며, 그 부칙 제1조에 의하여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제조물책임(Product Liability)이란 시장에 유통된 상품에 결함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상품의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생명, 신체 또는 상품 이외의 재산상의 손해를 입었을 경우, 그 상품의 제조업자 등이 결함상품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피해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을 말한다.

제조물책임의 의의를 간략하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 ① 제조물책임을 지는 자는 결합제조물을 제조한 “제조업자”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수입업자, 부품업자, 공급업자도 책임을 지게 된다.
- ② 제조물에 “결함”이 있는 경우에 제조물책임을 지게 된다. 여기에서 “결함”이란 제조결함, 설계 결함, 표시결함이나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 ③ “손해”가 발생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손해에는 생명, 신체, 재산상의 손해(당해 제조물에 대해서만 발생한 손해는 제외)를 말한다.
- ④ 제조물의 결함이 “원인”이 되어 손해가 발생하여야 한다. 결함을 원인으로 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조물책임의 대상이 아니다.
- ⑤ 제조물책임은 제조업자가 소비자에게 직접 손해를 배상하는 책임이다. 피해자가 제조자로부터 직접 제조물을 구입하지 않은 경우에도 즉 당사자간에 계약관계가 없다 하더라도 제조업자가 책임을 지는 것이다.
- ⑥ 제조물책임은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라는 점에서 형사상 책임이나 행정상 책임과 구별된다.

제조물로 인한 사고의 발생은 매우 다양하고 그로 인한 손해의 정도도 각양각색이다. 이러한 제조물 사고는 소비자뿐만 아니라 제조업자에게도 치명적일 수 있으므로 제조물사고의 사전예방 및 동종 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수립이 필수적인 과제라 할 수 있다.

사고를 유발하는 제조물의 결함은 제조물의 설계·제조·판매 등 전 과정에서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고, 이러한 발생원인을 미리 예측하고 규명하여 대처하는 것이야말로 제조물책임에 대응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내용이다.

제조물책임에 대응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과거에 발생한 제조물 사고를 통해서 실용적인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이미 알려진 사례, 특히 판례를 살펴보는 것은 매우 유익한 방법이다. 판례에서 사고의 개요와 발생원인, 피해자의 주장과 입증내용, 피고인 제조업자의 방어내용, 그리고 쟁점에 대한 법원의 판단내용 등을 통해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제조물책임법이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아직 제조물책임법이 적용된 판례는 없다. 다만 제조물책임법리를 민법에 근거하여 적용한 판례가 적지 않게 보인다. 이에 반하여 일본의 경우에는 이미 제조물책임법이 적용된 많은 판례들이 축적되어 있다. 특히 우리나라와 입법체계가 같은 일본의 판례는 향후 전개될 우리나라의 제조물책임 판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잣대가 될 수 있다.

이하에서 제조물책임법의 내용 중 특히 식품산업과 관련하여 문제될 수 있는 부분을 살펴보고 아울러 관련판례를 소개하도록 하겠다.

## II. 제조물의 범위

법 제2조 제1호는 제조물을 “다른 동산이나 부동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를 포함한 제조 또는 가공된 동산”이라고 정의하여 제조 또는 가공된 동산만을 포함시키는 것으로 하고 있다. 식품산업과 관련하여 문제될 수 있는 것은 다음과 같다.

### 1. 농수축산물

야생의 식물·동물을 채취·포획한 경우와 이와 동일시할 수 있는 경우는 제조 또는 가공으로 볼 수 없으므로 제조물에 해당되지 않는다. 미가공 1차 농수축산물은 그 성질상 동산이기는 하지만 동산이 제조 또는 가공된 것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제조물에 해당되지 않으며, 이에 따라 미가공 1차 농수축산물의 섭취로 인하여 부작용이 발생하여도 그 생산자는 제조물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그러나 유전자가 조작된 1차 농수축산물이나 농약잔류 또는 항생물질을 함유하고 있는 1차 농수축산물의 경우에는 그 적용이 문제된다.

입법례를 살펴보면, EU에서는 최근 종전 지침의 제15조 제1항 a호를 삭제하고, 제2조를 개정하여 미가공 1차 농수축산물 및 수렵물 제외규정을 삭제하여 미가공 1차 농수축산물에도 EU지침상의 무과실책임이 적용되도록 하였다. 또한 프랑스에서도 이 부분에 관한 제조물책임의 성립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대부분 유럽의 여러 나라 및 일본에서는 미가공 1차 농수축산물에 관한 제조물책임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 미국의 경우에는 미가공농수축산물에 대해서도 제조물책임을 원칙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농수축산물에 가공을 하면 제조물책임법의 대상이 된다. 이 경우 가공품과 미가공품을 어떻게 구별할 것인지는 중요한 문제이다. 우리보다 먼저 법을 시행한 일본에서도 이에 대하여 논

의가 있으나<sup>1)2)3)</sup> 가공과 미가공의 구별은 개별적으로 당해 농산물에 추가된 행위 등 제반 사정을 감안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요컨대, 가공과 미가공의 구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더라도 법개념으로서의 추상성은 피할 수 없다. 각 국의 예에서 보더라도 최종적으로는 판례를 통해 그 의미를 정립해 나가야 할 것이다.

## 2. 부품 및 원재료

피해자가 최종적으로 사용하는 제조물은 수많은 부품·원재료를 사용하여 제조·가공된 것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부품·원재료 자체는 인도될 완성품을 사용할 피해자를 상대로 제조·판매된 것은 아니다. 또한 완성품 사용자에게 인도될 당시에는 독립한 동산으로서의 성격도 상실하게 된다. 따라서 완성품 사용자인 피해자가 최종 제조물의 제조업자가 아닌 그 부품이나 원재료 제조업자를 상대로 제조물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생길 수 있다.

제조물책임법 제2조 1호는 ‘제조물은 다른 동산이나 부동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를 포함한 제조 또는 가공된 동산을 말한다.’라고 하여 부품 및 원재료에 대해서도 제조물책임법의 적용대상이 된다는 것을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최종 제조물의 결함이 부품 또는 원재료의 결함에 기인하고 있는 경우에는 최종 제조물의 제조업자와 함께 부품·원재료 제조업자도 연대하여 제조물책임을 부담 한다(법 제5조).

그러나 부품·원재료 제조업자는 부품·원재료의 결함이 당해 부품·원재료를 사용하여 만들어진 제조물 제조업자의 설계 또는 제작에 관한 지시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면책사유에 해당되어 제조물책임을 지지 않게 된다(법 제4조4호).

식품산업의 경우 원재료에 결함이 있어 완성품의 소비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원재료 제조업자와 완성품의 제조업자는 연대책임을 진다.

## III. 결함의 개념

### 1. 책임요건으로서 결함의 의의

- 1) 일본의 제조물책임법 입법과정에 있어서의 정부답변을 살펴보면, 가열, 조미, 절임, 분말화, 즙짜기, 통조림 가공 등은 가공에 해당되지만, 단순한 절단, 냉동, 건조 등은 가공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經濟企劃廳國民生活局消費者行政第一課編, 製造物責任制度を中心とした總合的な消費者被害・救濟の在り方にについて, 1994, 61面; 通商產業省產業政策局消費者政策課編, 製造物責任法の解説, 1994, 172面).
- 2) 자연산물 등에 대한 가공이라 함은 그 생산 후에 가해진 모든 인위적인 처리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朝見行弘, 業種別製造物責任對策ハンドブック, 中央經濟社, 1995, 26面).
- 3) 냉동, 건조 등에 의하여 물건의 종류·성질(속성)이 변한 경우에는 제조물에 포함되며, 장기 보존을 위해 수확된 농수산물에 약액을 가한 경우에도 가공품으로 간주될 수 있다. 또한 새로운 제조물에 대한 기술적·인위적인 형태 변경은 가공에 해당하며, 예컨대 곡물의 제분, 가축의 도살, 생선을 어분으로 만드는 것은 가공이며, 나아가 기계적인 건조, 방부처리, 가축의 내장 제거, 생선의 가염처리, 냉동도 가공으로 해석해야 한다(Mary Sharp, 東京海上研究所編, 新製造物責任法大系 I, 弘文堂, 1994, 310面).

종래 제조물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민법에 의거하여 제조업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요구하였다. 민법 제750조에 의하면 결함 제조물에 의해 손해가 발생하여도 그 결함이 가해자인 제조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제조업자의 책임 유무가 결정된다.

제조물책임법은 제조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 유무와는 관계없이 제품의 결함만 존재하면 제조업자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제조물책임법에 의하면 제조업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제조물의 결함이 있다는 것을 원고(피해자)가 입증하면 피고(제조업자)가 손해에 대해 배상책임을 지게 되어, 피해자 입장에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기가 훨씬 쉬워지며 제조업자에게는 보다 엄격한 책임이 부과되고 있다.

여기에서 유념해야 할 것은 제조물에 결함이 있으면, 제조업자에게 고의·과실이 없더라도 책임을 지게 되는 무과실책임 원칙이 제조물책임법의 핵심이지만, 제조물에 결함이 없는 이상 책임을 질 필요는 없다는 점이다. 제조물에 결함이 있고 그 결함으로 인하여 피해(화재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만 해당 제조물의 제조업자가 책임을 지므로 결함은 제조물책임법의 핵심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 2. 결함의 정의

제조물책임법은 결함을 제조물의 제조·설계 또는 표시상의 결함이나 기타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여기서 안전성은 인간의 신체나 생명에 영향을 주는 위험이 없는 것을 말하지만, 최근에는 재산을 훼손·소손하는 등의 위험이 없는 것도 포함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결함은 제조물을 통상 예견된 방법으로 사용함에 있어서 생명, 신체 및 재산상에 부당한 위험을 발생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단순한 품질불량, 성능의 장애는 결함의 문제로 볼 수 없다.

요컨대, 제조물책임법상의 결함이란 제조물의 품질이 낮다는 것과는 하등의 관계가 없다. 어떤 제조물이 품질이 나쁘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이유로 제조물에 결함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인적 손해나 당해 제조물 이외의 물적 손해를 초래하는 것과 같이 제조물의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 비로소 결함이 인정된다.

## 3. 결함의 유형

제조물책임법은 제2조 제2호에서 결함을 “당해 제조물이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제조·설계 또는 표시상의 결함이나 기타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 규정함으로써 결함을 제조상의 결함, 설계상의 결함 및 표시상의 결함으로 세분하고, 부가하여 기타 일반적 안전성결여도 결함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와 같은 결합개념의 세분화 및 유형화는 결함에 대한 이해와 그 존부의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고 또는 강학상 필요할 수 있다. 그러나 무과실책임을 기초로 하는 제조물책임에서는 이러한 유형화는 이해를 위한 보조도구일뿐이다. 유형화된 각각의 결함의 정의도 결국 추상적일 수밖에 없으며, 또한 포괄적으로 기타의 경우를 인정함으로서 결국 일반적인 안전성의 결여를 결함이라고 볼 수 있다. 법규정에 따라 결함을 유형화하면 다음과 같다.

## 1) 제조상의 결함

제조물책임법은 '제조상의 결함을 제조업자의 제조물에 대한 제조·가공상의 주의의무의 이행여부에 불구하고 제조물이 원래 의도한 설계와 다르게 제조·가공됨으로써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조상의 결함은 제조물이 설계서대로 제조되지 않아 안전성을 결여한 경우로, 제조과정에서 조악한 재료가 사용되거나 부정확한 제조물의 조립 또는 검사방법의 잘못으로 안전성을 결여한 경우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따라서 제조상의 결함에서는 설계대로 제조된 제조물과 그렇지 못한 제조물의 차이가 결함 판단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게 된다.

제조상의 결함은 오늘날 기업들이 품질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으므로 발생할 가능성은 희박할 수도 있지만, 반면에 현대의 대량생산체계를 생각하면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다. 설계상의 결함 및 표시상의 결함은 그것이 일단 인정되면 동일제조를 모두에 결함이 인정되는 것임에 반하여, 제조상의 결함은 단발적으로 발생하게 된다.

식품산업의 경우 생산과정에서 이물질이 혼입된다거나 생명·신체에 유해한 약품을 혼입하거나 생산관리를 철저히 하지 아니하여 부패된 제품을 유통시킨 경우 소비자가 그 제품으로 인하여 질병이나 부상을 당하면 제조업자는 제조상의 결함에 의하여 제조물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제조상의 결함과 관련된 사건으로 미국의 판례로서 다음 사례가 있다.

**Escola v. Coca Cola Bottling Co. of Fresno, Supreme Court of California, 1944(24 Cal.2d 453, 150 P.2d 436)**

[사건개요] 식당 여종업원인 원고는 그녀의 손에서 코카콜라 병이 깨어져 부상을 당하였다. 원고는 결함 있는 병을 만들어 원고의 고용주에게 공급한 피고 회사에게 과도한 가스의 압력이나 병의 어떤 결함 때문에 위험하고, 폭발하기 쉬운 음료수 병을 판매한 데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원고에게 유리한 평결에 기한 판결이 선고되자 피고 회사가 상소하였다.

원고는 자신이 병을 상자에서 냉장고로 병을 옮기는 도중에 병이 손에서 폭발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사고를 목격한 동료 종업원도 원고가 병을 다른 물건에 부딪치지 않았다고 증언하였다. 어떤 특별한 과실행위를 입증할 수 없었기 때문에 원고는 전적으로 사실추정(res ipsa loquitur)의 법리에 의존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사실추정의 법리가 적용될 수 없고, 판결을 지지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다투었다.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 회사에 의하여 식당으로 배달된 후에 외부적인 힘에 의하여 병이 손상을 입지는 않았던 것으로 합리적으로 추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다. 그러므로, 이 병은 피고 회사의 통제를 벗어날 당시에 어떤 결함이 있었던 것으로 된다.

왜냐하면 신중하고 적절하게 준비된 탄산음료 병은 통상 주의깊게 다루면 폭발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 사건에서 과도한 음료의 투입이나 병 유리의 결함 때문에 폭발하게 되었는지는 명백하지 않지만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면 위의 어느 원인도 통상 있을 수 없다는 충분한 입증이 있다. 나아가 피고 회사는 병에의 음료 투입과 검사 모두에 대하여 배타적인 통제권을 갖고 있다. 따라서 원고가 과실이 있다는 추정을 가능하게 하는 사실추정의 법리에 의지할 수 있게 하는 모든 요건이 충족되어 있다.

## 2) 설계상의 결함

제조물책임법은 설계상의 결함을 '제조업자가 합리적 대체설계를 채용하였더라면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대체설계를 채용하지 아니하여 당해 제조물이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설계상의 결함은 보다 안전한 합리적 대체설계(Reasonable Alternative Design)를 선택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조업자가 이것보다 열등한 설계를 선택한 경우를 의미한다.

결국 설계상의 결함은 제조물의 설계단계에서 안전성에 대한 배려가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안전성이 결여하게 된 경우를 의미한다.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효용, 안전성, 경제성, 소비자의 기호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선택하고 기획·설계하게 되므로, 제조업자의 안전성에 관한 앞의 요소의 선택이 적당한 것인지 여부가 설계상의 결함을 판단하는 요소이다. 그 판단은 최종적으로는 법관이 하게 되지만, 법관은 통상인의 입장에서 안전성을 판단하게 될 것이다.

설계상의 결함과 관련한 사례로는 다음의 일본 판례가 있다.

### 종이팩 용기 사건(니이가타지방재판소 1999.9.8 판결)

[사건 개요] 원고인 레스토랑경영자가 홍차의 업무용 팩용기의 주출구에 붙어 있는 블루링을 당겨서 개봉할 때에 플라스틱제인 주출구가 예리하게 되어 있었으므로, 개봉시에 이를 밀었던 왼쪽엄지의 가운데를 위 홍차구입개시인 1993년 7월 이후, 7월7일까지 사이에 합계 10회 부상하여 위 용기 홍차제조회사와 위 용기제조회사 양 사에 대해 제조물에 결함이 있으며 결함제품을 제조한 양 사에 중대한 과실이 있으므로 민법의 공동불법행위 및 제조물책임법 제3조에 근거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이다.

[쟁점] 본건 사고에 제조물책임법의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또한 주출구에 의해 부상하였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판단] 제조물책임법의 적용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재판소는 제조물의 인도에 대해서 제조업자 등이 자기의 의사에 근거해 제조물의 점유를 거래하는 상대방에게 이전하여 결함이 있는 제조물의 위험성을 현실화시키는 것을 말하고 1개의 제조물의 제조에

복수의 제조업자 등이 관여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개별업자에게 제조된 것을 인도한 시기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그 책임(인도)의 유무를 확정해야 할 것이며, 소비자가 판매점에서 제조물을 구입한 시점이 일률적으로 제조업자 등으로부터의 인도로 인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하면서, 원고가 부상했다고 하는 용기에는 「95·05·18」이란 글자가 인쇄되어 있고, 이를 업무재고일보와 홍차제조회사의 공장종업원의 증언, 변론의 전취지에 의해 원고가 경영하는 레스토랑에 인도된 시기는 1995년 7월 1일보다 이전이므로 제조물책임법의 적용은 없다고 판단했다.

주출구에 의해 부상을 당했는지에 대해서는 원고의 부상에 대해서 원고가 부상했다고 진술한 부분은 그 사실이 있었다는 한도에서는 적어도 신용할 수 있음을 기본으로 감정인의 절창 모양의 흔적과 본건 용기의 주출구의 형상이 일치하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 원고 주장의 부상이 발생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는 결론을 채용하고 그에 더해 모니터 조사와 피고인 용기제조회사의 실험결과 누계 1억 5천만 개 이상 출하했으나 원고 이외의 부상 예를 파악하지 않고 있는 것 등으로 인해 용기에 의해 원고가 부상한 것은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시사점] 본 사건에서는 제조자의 책임을 부인하였지만 식품용기의 설계상의 결함과 관련하여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용기로 인하여 부상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으로 위험의 회피가 가능하다면 설계변경을 하여야 할 것이며, 설계변경으로도 그러한 위험을 회피할 수 없다면 위험에 대한 안전장치를 마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최소화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 3) 표시상의 결함

제조물책임법은 표시상의 결함을 '제조업자가 합리적인 설명·지시·경고 기타의 표시를 하였더라면 당해 제조물에 의하여 발생될 수 있는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표시상의 결함은 제조업자가 소비자측이 제조물을 사용·소비할 때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설명·지시하고, 잘못 사용하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예방·회피할 수 있도록 경고를 충분하게 하지 않은 경우로서 지시·경고상의 결함이라고도 한다.

설계상의 결함이나 제조상의 결함이 제조 과정이전 제조물의 형성 단계나 제조 과정에서의 결함인데 대하여, 표시상의 결함은 생산 후 유통과정에 둔 단계에서부터 문제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마아켓팅상의 결함이라고 하기도 한다.

표시상의 결함이 문제될 수 있는 경우는 ① 경고해야 할 위험이나 설명해야 할 지시가 표시되지 않은 경우, ② 표시된 경고 내지 지시의 내용이 불충분한 경우, ③ 경고의 표시 부착방법이나 지시의 기재방법 등이 부적절한 경우 등이다.

이러한 표시는 소비자를 위한 정보로서 매우 중요하다. 정보에는 사용정보와 선택정보로 나눌 수 있고, 사용설명서나 경고표시는 소비자의 사용정보로서 반드시 표시하여야 한다. 광고선전이나 카탈로그는 소비자의 상품선택을 돋는 선택정보이지만 소비자에게 제조물과 선전과의 차이를 느끼게 하거나 잘못된 사용을 유도할 수 있다는 면에서 그 중요성이 있다.

따라서 제조물책임법 시대에는 광고 선전까지 넓게 표시의 범주에 포함시키게 되므로 지나치게 과장하거나 잘못된 광고 선전은 지시·경고상의 결함으로 인한 제조물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Safety-Kleen」이라는 상품명으로 판매된 세제에서 유독가스가 발생하여 주부가 사망한 사고에서, 「Safety」라는 단어가 부적절하다는 것을 이유로 세제 제조업자에게 배상책임을 인정한 경우도 있다.

참고로 미국보험협회가 1986년에 작성한 보고서에 의하면 제조물책임 보험금 지급사례 중에 경고라벨의 미비가 전체의 41%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4) 기타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의 결여

법에서는 결함을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을 결한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반드시 제조물의 절대적인 안전성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현대의 과학기술 수준과 경제성에 비추어 기대 가능한 범위내의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추어야 하는 것이다.<sup>4)</sup>

이에 대한 판단은 사회의 보편적인 가치기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이는 절대적 개념이 아니라 상대적 개념인 것이다. 즉 우리 사회가 제조물에 어느 정도의 안전성을 요구하는가 또는 국제적인 안전수준은 어떠한가가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다. 우리 사회가 안전성을 보다 중시할 때에는 결함의 판단에 안전성기준은 보다 강화될 것이다. 국회심사보고서에서는 소비자의 기대수준을 결함판단기준으로 보아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제조결함에서는 결함의 판단에 대하여 미국에서는 표준일탈기준<sup>5)</sup>, 소비자입장에서는 소비자기대기준<sup>6)</sup>, 설계나 표시상의 결함에서는 위험효용기준<sup>7)</sup> 그리고 바커기준<sup>8)</sup>을 결함판단의 근거로 활용하

4) 대법원 2000.2.25(98다15934 구상금).

5) 어떤 제조물이 다른 많은 제조물과 비교하여 다르다면, 그 제조물은 통상의 상태로부터 일탈하고 있는 것으로 된다. 표준일탈기준은 설계상의 결함과 표시상의 결함을 판단할 때에는 적용되지 않는데, 이들 경우에 무엇이 제조물의 통상의 상태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 기준이 존재하기 않기 때문이다. 당해 제조물의 설계도를 다른 제조업자가 제조한 동종 제조물의 설계도와 비교함으로써 통상 상태의 일탈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견해도 있으나, 이와 같은 업계의 관행으로부터의 일탈을 가지고 이를 결함의 판단의 기준으로 삼는 사례는 없다.

6) 소비자기대기준은 소비자가 통상적으로 기대하는 안전성을 결여하고 있는 경우에 결함의 존재를 인정하는데, 미국에서도 지금은 이 기준을 사용하여 결함의 판단기준으로 하는 경우는 흔하지 않다. 왜냐하면 소비자기대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누가 통상적인 소비자인지를 결정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배심원들이 소비자인 자신의 기대를 기준으로 하거나 심지어 피해자의 주관적 지식을 기준으로 삼아 소비자의 기대를 판단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현재 미국에서는 소비자기대기준은 독자적인 기준은 되지 않고 위험효용기준의 한 요소로 이용되고 있다(American Law Institute, Op. Cit., 1998, p.27).

7) 위험효용기준은 설계상의 결함이나 표시상의 결함을 판단할 때 이용한다. 여기에서는 제조물이 갖는 위험

고 있다.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을 결여한 사례로서 일본의 다음 판례가 있다.

### 주스 이물질 사건(나고야지방재판소 1999.6.30 판결, 항소)

[사건 개요] 소비자A는 1998년 2월 13일 동료와 함께 B페스트푸드점에서 점심식사용으로 더블 치즈버거세트(더블치즈버거, 감자튀김, 오렌지주스를 세트로 하여 판매하고 있던 것)를 525엔으로 구입해 자신의 사무실에 가지고 와서 먹었다. 그런데 쥬스를 마신 후 갑자기 피를 토하자 사무실 근처의 병원에서 진찰을 받고 구급차로 국립 병원에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이 사고로 소비자A는 B페스트푸드에 대해 제조물책임, 채무 불이행책임, 불법행위책임 등을 물어 약 40만엔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다.

[쟁 점] 소비자A가 다량의 출혈을 수반하는 상해를 입은 사실이 있었는가 및 직경 약 7밀리미터의 빨대를 통과할 수 있는 이물이 혼입되었는가 여부가 쟁점이다.

[판 단] 소비자A가 토혈을 호소한 직후에 소비자A를 진찰한 의사가 구급차를 불러 국립병원에서 진찰받도록 권한 것, 국립병원의 의사도 후두 fiberscope로 점막아래에 출혈을 인정하여 진단서를 쓰고 있는 사실에서, 소비자A는 위 진단서 기재의 내용의 수상을 입었다고 인정된다. 또 소비자A에 대해 후두의 외상에 대한 치료는 행해지지 않았지만, 목의 점막 부분이라고 하는 부위의 특성에서부터 국립병원에서의 진찰 까지 절창부분이 닫혀버리는 것 때문에 상처의 치료가 불필요해지는 것은 충분히 생각되어 후두의 외상에 대한 치료가 없는 것으로서, 소비자A가 수상을 입은 사실

---

성이 유용성을 상회하는 경우 결합의 존재가 인정되며, 미국에서 현재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는 결합판단의 기준이라고 하겠다.

그러나 위험효용기준에도 문제는 있는데, 제조물의 위험과 효용을 비교할 때 어떠한 요소를 고려하여야 하는가 인데, 그러한 요소는 개별 사례마다 달라서 이를 일반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매우 곤란하다.

웨이드 교수는 위험효용기준에서 고려해야 할 7개 요소를 제시하고, 이들을 비교 형식하여 결합 유무를 판단할 것을 주장하였다. ① 제조물의 유용성과 필요성, ② 제품의 안전성과 손해발생의 개연성 및 손해의 정도, ③ 대체설계의 가능성, ④ 제조자에 의한 위험회피의 가능성, ⑤ 소비자에 의한 위험방지 가능성, ⑥ 위험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 ⑦ 제조업자에 의한 손실분산의 가능성 등이다(關本佳世, 企業のPL對策, 1995, 商事法務研究會, 78面).

8) 바커기준은 주로 설계상의 결함을 판단할 때에 이용되는 결합판단 기준이다. 캘리포니아주 대법원은 1978년 바커사건 판결에서, ① 제조 중 설계에 의하여 초래되는 위험의 중대성, ② 그와 같은 위험이 생기는 개연성, ③ 보다 안전한 대체설계의 기술적 가능성, ④ 대체설계에 소요되는 비용, ⑤ 대체설계에 의하여 제조물 및 소비자에게 생기는 악영향 등의 사항을 고려하여, 현재 사용중인 설계의 의한 이익이 그 설계에 본래 동반하는 위험을 상회한다는 사실이 밝혀지지 않는 경우, 설계상의 결합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결하였다.

이 좌우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소비자A의 진술에는 상처가 좌우 어느 쪽의 후두였는지 착각하거나, 상해의 상태에 대해서 약간 과장되게 말하고 있다고 보여지는 부분도 존재하지만, 소비자 A의 진술은 수상으로부터 1년 후의 진술인 것, 수상 당시 소비자A가 쇼크로 혼란하였던 것을 함께 생각하면, 소비자A의 진술에 위와 같은 부분이 있는 것은 소비자A 가 수상을 한 것 자체를 뒤집을 만한 사정이라고는 할 수 없다.

직경 약 7밀리미터의 뺄대를 통과 할 수 있는 이물이 혼입되었는가 여부에 대해서, ①소비자A는 주스를 마신 직후에 목에 부상당한 것 ②B패스트푸드점이 본건 주스를 판매하고 나서 소비자A가 그것을 마실 때까지의 사이에 주스에 목에 상해를 입게 하는 것 같은 이물이 혼입될 기회는 없었다고 생각되는 것, ③소비자A는 수상 당시 치과치료를 받고 있지 않았고, 또 더블치즈버거나 fried potato를 모두 먹고 나서 주스를 마시고 있는 바, 소비자A의 구강 내에 미리 이물이 존재하고 있었다고는 생각되지 않는 것 등에서 수상은 주스에 혼입되어 있던 이물이 원인이라고 함이 인정된다. B패스트푸드점은 주스의 제조공정에서 직경 약 7밀리미터의 뺄대를 통과 할만한 이물이 혼입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제조공정에서 주스를 오렌지주스머신 내의 용기에 넣을 때나, 보존고로부터 얼음을 견뎌 올릴 때 등에 이물이 혼입될 가능성은 부정할 수 없기 때문에 B패스트푸드점의 주장은 채용할 수 없다. 그리고 주스에 그것을 마신 사람의 목에 상해를 입힐 수 있는 이물이 혼입되어 있었다고 하는 것은 주스가 통상 가져야 하는 안전성을 결여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스에는 제조물책임법상의 결함이 있다고 인정된다.

입은 손해에 대해서는 소비자A는 수상 후 토헬해 의사에 의해 구급차로 국립병원에 이송됨이 상당하다고 판단될 정도의 상태였다. 또 국립병원에서는 제토제의 링겔을 맞은 바, 수상에 의해 상당한 쇼크를 받은 것이라고 인정된다. 그리고 위십이지장 fiberscope에 의해서도 이물이 발견되지 않았고, 검사를 위해 지참한 주스도 버려져 원인의 해명이 충분히 되지 않았던 것을 감안하면, 국립병원에서 돌아간 후에도 불안감과 공포감이 남아 2일간 자택에서 안정을 취해야 했던 것도 이해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이상과 같이 원고는 수상에 의해 상당한 정신적·육체적인 고통을 당한 것이 인정되고 이에 대한 위자료로서는 5만엔이 상당하다. 본건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변호사 비용분의 손해는 5만엔으로 인정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 [기 타] 이 사건은 일본에서 B패스트푸드점이 제조·판매한 주스를 마시고, 그 중에 들어 있던 이물에 의해 목에 상처를 입었다고 하는 사안에 대해, 제조물책임(PL)법 제3조를 적용해 제조업자의 제조물책임이 인정된 획기적인 PL법 적용 제1호 판결로 알려진 사건이다.

피고 제조업자는 안전 대책은 충분히 취하고 있었으므로, 이물은 원고의 구강내

에 미리 존재하고 있었고, 원래의 이물이 발견·특정되지 않았으며, 원고의 수상의 증명도 불충분하다는 등으로 해서 다투었지만 재판소는 주스의 제조공정, 판매, 음식의 경과를 상세하게 인정한 다음, 주스에 이물이 혼입될 가능성은 부정할 수 없다고 하고, 주스가 통상 가져야 하는 안전성을 결여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건 주스에는 제조물책임법상의 결함이 있다고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 위 이물은 발견되지 않았고 결국 이물이 무엇이었는가는 불명인 채로 있지만 판결은 (아마, 소비자A가 구토했을 때 이물도 토해낸 것으로 생각되고 주스도 검사하지 않는 채 버려졌기 때문에 더 이상 소비자A에 이물의 특징을 요구하는 것은 가혹하다) 그것이 어떠한 것이든 주스 안에 마신 사람에게 상해를 입힐 수 있는 이물이 혼입되어 있다면, 주스가 통상 가져야 하는 안전성을 결여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고 할 것인 바, 주스에 그것을 마신 사람의 목에 상해를 입힐 수 있는 이물이 혼입되어 있었다고 하는 사실 자체는 분명한 이상, 이물의 정체가 불명확하다는 것은 위 인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명쾌하게 판시하였다. 이 판례는 사실상의 추정을 활용하는 등으로 피해자의 입증부담을 경감 시켰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는 판례이다. 이 사건은 판결 이후 원고와 피고가 모두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이 진행 중 30만엔의 손해배상금으로 양측이 화해하여 종료되었다.

## IV. 책임주체

제조물책임법 제2조 제3호에서는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제조·가공 또는 수입을 업으로 하는 자와 제조물에 성명·상호·상표 기타 식별가능한 기호 등을 사용하여 자신을 제조·가공 또는 수입업자로 표시한 자 또는 제조·가공 또는 수입업자로 오인시킬 수 있는 표시를 한 자(표시제조업자)를 말한다. 또한 제3조 제2항에서 제조물책임을 지는 주체로 제조물공급자를 인정하고 있다.

### 1. 제2조 제3호 가 목의 제조업자(이하 좁은 의미의 제조업자라 부른다)

좁은 의미의 제조업자는 실제로 결함있는 제조물을 제조한 자로서, 이와 같은 제조물의 제조를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여기에서 “業”이란 동종의 행위를 반복, 계속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일회적으로 제조물을 제조하였다 하더라도 업으로써 한 행위라면 이에 포함된다.

완성품에 부품이나 재료가 결합된 경우에 그로 인하여 완성품에 결함이 발생하였다면 부품업자나 재료공급자도 책임의 주체로 인정될 것이다.

### 2. 가공업자

가공식품 등과 같이 자연생산물 등의 동산에 노력을 가하여 새로운 물건을 만들어 내는 자를 말한다. 주로 식품가공이 대상이 될 것이다.

### 3. 수입업자

수입품에 결함이 있는 경우, 외국의 제조업자는 당연히 제조물책임을 부담한다. 뿐만 아니라, 수입업자는 유통업자이지만 제조물책임법에서 특별히 제조업자로 취급하고 있다.

수입품의 경우에는 제조업자가 현실적으로 국내에 있지 아니하여 소송절차에 의한 책임의 추궁이 어렵고 설사 제조업자에 대한 판결을 얻는다 하더라도 그 집행절차가 용이하지 아니하므로 일반 소비자로서는 외국의 제조업자를 상대로 하여 책임을 추궁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다는 현실적인 이유가 있다. 수입업자는 자기의 의사로 결합제조물을 국내 시장에 처음으로 유통시킨 원천공급자인 점, 수입할 때에 외국의 제조업자 내지 판매업자에 대한 구상권을 확보하고 있으면 최종적으로는 수입업자 자신이 손해배상의 부담자가 되지 않는다는 점 등을 이유로 수입업자도 제조물책임을 부담한다.

### 4. 표시제조업자

제조물을 직접 제조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제조물에 성명·상호·상표 및 기타 식별가능한 기호 등을 사용하여 제조업자로 표시하였거나 제조업자로 오인시킬 수 있는 표시를 한 자도 제조업자로서 제조물책임법상 책임의 주체가 된다.

이에 관한 예로써 들자면 OEM(Original Equipment Manufacturing) 방식 또는 PB(Private Brand)상품이 이에 속할 것으로 보여진다. OEM방식이나 PB방식은 서로 조금 차이가 있으나 기본적으로 상표권자와 공급원인 제조업자가 계약을 체결하여 제조업자가 상표권자의 상표를 붙여 공급하는 경우를 말하며, 이 경우에는 소비자는 제조물의 외관 또는 상표권자의 상표를 신뢰하여 제품을 구입하는 것이므로 제조원이 표시되지 않는 경우에는 상표표시자가 제조물책임을 부담하여야 할 것이며, 제조원이 표시된 경우에는 상품을 실제로 제조한 제조업자뿐만 아니라 자신의 제품인 것처럼 판매한 자도 책임을 부담하여야 할 것이다.

### 5. 제조물공급자

원칙적으로 공급업자는 스스로 제조물의 설계·제조에 관여하고 있지 않으므로 피해자에게 채무불이행책임 또는 보증책임 등 계약상의 책임이나 일반불법행위책임을 지고 제조물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러나 제조물책임법은 일정한 경우에는 공급업자도 2차적으로 제조물책임은 부담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결함 제조물의 제조업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자신에게 결함제조물을 공급한 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공급업자는 제조업자와 달리 반드시 제조물을 영리목적으로 판매·대여 등의 방법으로 공급한 경우에 한하여 2차적으로 제조물책임을 부담하며, 비영리목적으로 공급한 경우에는 2차적인 제조물책임도 부담 않는다. 그리고 공급업자는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상당한 기간내<sup>9)</sup>에 제조업자 또는 당해 결합제조물을 자신에게 공급한 자를 피해자측에게 통지한 경우에는 제조

9) 독일 제조물책임법 제4조는 “공급자는 청구의 도달 후 1개월 이내에 피해자에게 제조자 또는 자기에게 제조물을 공급한 자를 알려준 경우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물책임을 면한다. 이에 따라 결합제조물을 제조한 제조업자가 도산한 경우, 공급업자가 도산한 제조업자의 이름과 소재를 통지한 이상, 공급업자는 제조물책임을 면하게 되어, 피해자는 결국 손해를 배상 받을 수 있는 길이 없게 된다.

제조물이 제조업자에게서 출하될 때 당시에는 결합이 없는 것이었으나, 공급업자가 보관 중에 고의 또는 과실로 결합이 발생한 경우 공급업자는 일반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 V. 입증책임

입증책임이라 함은 어떤 사실의 존재가 불분명한 경우에 그 사실을 증명하는 의무를 의미한다.

제조물책임법의 제정과정에서 소비자와 사업자간에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였던 부분이 바로 입증책임에 관한 것이었다. 제조물책임법은 입증책임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민사소송의 일반원칙에 따라 피해자가 ① 제조물에 결합이 존재한다는 사실 ②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 ③ 결합과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을 부담한다. 입증의 정도는 일반원칙에 의해 통상인이 의심을 품지 않을 정도로 진실하다고 확신할 수 있는 정도로 증명하여야 한다.

그러나 오늘날 판례의 경향을 살펴보면 결합과 인과관계에 대하여 사실상의 추정을 활용함으로써 피해자의 입증책임을 완화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증거가 제조업자에게 있는 경우, 판사의 소송지휘에 따라서 제조업자가 증거를 제출하고 있으며, 또한 판사의 경험칙에 의거한 사실상의 추정에 의한 인정이 널리 행해지고 있어서, 사안의 실정에 따른 입증책임의 사실상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여기에서 사실상의 추정이라 함은 실제의 재판에서 법원이 피해자가 제조물의 특성을 잘 모르고 사용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피해자가 통상적인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었음에도 사고가 발생하였다 는 사실만을 입증하면, 해당 제조물에 결합이 있고 그 결합으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제조업자는 결합 이외의 다른 원인에 의하여 제조물사고가 발생하였음을 반증하지 못하면 제조물책임을 면할 수 없게 된다.

### TV 폭발 화재사건 (대법원 2000. 2. 25, 98다15934 구상금)

[사건 개요] 소비자 A씨는 B전자에서 생산·판매하던 16인치 비디오비전(TV와 VTR 겸용)을 1990년경 구입하여 사용하고 있었다. 그런데 1996. 7. 3. 12:00경 시청하고 있던 중, 갑자기 텔레비전 뒤편에서 검은 연기가 피어올라 동작스위치를 끄고 전원플러그를 뽑았으나, 곧이어 텔레비전에서 '펑'하는 폭발음과 함께 불이 솟아오르면서 커텐에 옮겨 붙어 급기야 건물의 2층 내부와 그 안의 가재도구가 모두 불에 타버리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 사고는 텔레비전 수상관(일명, 브라운관) 내의, 고전압이 걸려 있는 전자총 부분이 누전으로 인하여 폭발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될 뿐, 그 누전이

발생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는 규명되지 않았다. 마침 소비자 A씨는 C화재보험에 1억원의 장기종합보험을 들고 있었으므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을 받았으며, 보험금을 지급한 C화재보험회사가 텔레비전 제조사인 B전자에 구상금으로 5천 6백여만원의 지급을 청구한 사건이다. 이 사건은 제1심에서 C화재보험회사가 패소하자, 항소하여 일부 승소하였고, 이에 B전자가 상소하여 대법원에서 B전자가 패소함으로써 최종 확정된 사건이다.

[쟁점] 제조물책임의 성립요건과, 제조물책임에 있어서의 입증책임의 분배 및 내구연한을 초과한 상태에서 발생한 제품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성립여부

[판단] 이 사건에서 재판부는 “이 사건 텔레비전의 폭발의 원인이 된 전자총 부분의 누전 경위가 명백히 밝혀지지는 아니하였으나, 이 사건 텔레비전이 위와 같이 이를 정상적으로 수신하는 상태에서 폭발한 이상,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텔레비전은 그 이용시의 제품의 성상이 사회통념상 제품에 요구되는 합리적 안전성을 결여하여 ‘부당하게 위험한’것으로서 그 제품에 결함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고, 이와 같은 결함은 피고가 이 사건 텔레비전을 제조하여 유통에 둔 단계에서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고 추정되는바, 무릇 물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제조자는 그 제품의 구조, 품질, 성능 등에 있어서 현대의 기술 수준과 경제성에 비추어 기대 가능한 범위 내의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춘 제품을 제조하여야 할 책임이 있고, 이러한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추지 못한 결함 내지 하자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한다”고 판결하였다.

특히 “이 사건 텔레비전의 내구연한은 제품구입일로부터 5년으로 되어 있고, 이 사건 사고는 A가 이 사건 텔레비전을 구입한 지 5년이 경과된 이후에 발생하였으므로 책임기간이 지났으므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하는 B전자의 주장에 대해서도 “내구연한은 이 사건 텔레비전이 그 본래의 용도에 따라 정상적으로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여질 뿐, 이 텔레비전의 결함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권리 행사 기간 내지 피고의 손해배상채무의 존속기간을 정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고, 나아가 오늘날 일반 국민에게 널리 보급된 대표적 가전제품인 텔레비전은 제조자가 설정한 내구연한이 다소 경과되었다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이를 소비자의 신체나 재산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으로는 여겨지지 아니하므로 텔레비전의 제조자는 그 내구연한이 다소 경과된 이후에도 제품의 위험한 성상에 의하여 소비자가 손해를 입지 않도록 그 설계 및 제조 과정에서 안전성을 확보해야 할 고도의 주의의무를 부담한다 할 것”이라고 판시하면서, “만일 이 사건 텔레비전이 현대의 기술 수준상 내구연한 경과 후에는 내부 부품의 절연성 또는 내구성의 열화(劣化) 등으로 말미암아 발화, 폭발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 제조자인 피고로서는 사전에 소비자로 하여금 내구연한이 경과한 텔레비전은 사용을 중지

하고 반드시 이를 폐기 또는 교체하도록 지시하거나 발화, 폭발의 위험성에 관하여 경고하는 등 소비자가 제품을 안전하고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적절한 지시경고를 할 주의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이 점에서도 피고는 그 지시경고상의 결함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피고의 위 주장 역시 어느 모로 보나 그 이유 없다”고 하는 판결을 내렸다.

## [기 타]

### ① 결함의 존재와 인과관계에 대한 사실상의 추정 및 입증책임의 전환

이 사건은 비록 민법에 의한 판례이지만, 텔레비전이 정상적으로 수신하는 상태에서 발화·폭발한 경우에 있어서는, 소비자측에서 그 사고가 제조업자의 배타적 지배하에 있는 영역에서 발생한 것임을 입증하고, 그러한 사고가 어떤 자의 과실 없이는 통상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정을 증명하면, 제조업자 측에서 그 사고가 제품의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것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위와 같은 제품은 이를 유통에 둔 단계에서 이미 그 이용시의 제품의 성상이 사회통념상 당연히 구비하리라고 기대되는 합리적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결함이 있었고, 이러한 결함으로 말미암아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추정하는 이른바 “결함의 존재와 인과관계에 대한 사실상의 추정” 또는 “입증책임의 전환”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는 판결이라 할 수 있다.

### ② 설계, 제조, 표시상의 주의의무 부과

이 사건에서 판례는 “텔레비전의 제조자는 그 내구연한이 다소 경과된 이후에도 제품의 위험한 성상에 의하여 소비자가 손해를 입지 않도록 그 설계 및 제조 과정에서 안전성을 확보해야 할 고도의 주의의무를 부담한다 할 것”이라고 판시하면서, “만일 이 사건 텔레비전이 현대의 기술 수준상 내구연한 경과 후에는 내부 부품의 절연성 또는 내구성의 열화(劣化) 등으로 말미암아 발화, 폭발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 제조자인 피고로서는 사전에 소비자로 하여금 내구연한이 경과한 텔레비전은 사용을 중지하고 반드시 이를 폐기 또는 교체하도록 지시하거나 발화, 폭발의 위험성에 관하여 경고하는 등 소비자가 제품을 안전하고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적절한 지시경고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다.

## VII. 결 론

제조물 책임은 결함있는 제품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의 민사적 책임규속의 문제이므로 ‘결함’이 차지하는 책임법상의 기능은 매우 중요하고, 이와 관련된 소송도 대부분 결함의 존재와 인과관계의 입증에 집중된다. 피해자가 그 손해를 배상받으려면 결함의 존재, 손해, 결함과 손해와의 인과관계 등을 입증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각국의 입법과 판례가 일치하고, 다만 각국의 사정에 따라 그 입증의 정도와 손해의 범위만을 달리한다.

고도의 산업사회에 접어든 오늘날에는 대량생산과 소비를 통하여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게 되었고,

개인 각자는 타인이 생산한 물건을 소비·사용함으로써 삶의 질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왔다. 이제 인간은 타인이 생산한 제품을 사용하지 않고는 하루도 살아가기 어려울 정도로 타인이 생산한 제품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졌고, 그 만큼 제품의 결함으로 인한 불측의 손해를 입을 개연성이 커지게 되었으나, 고도의 기술이 집약되어 대량으로 생산되는 제품에 있어서는 그 제조원리와 과정에 문외한일 수밖에 없는 소비자가 그 제품의 결함의 존재를 입증하고, 나아가 결함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다. 따라서 제조물책임에 있어서도 다른 불법행위 분야와 같이 피해자의 입증책임을 완화시켜 줄 필요성이 대두된다.

지금까지의 판례를 보면, 제조물책임에 있어서 결함의 존재, 손해의 발생 및 결함과 손해의 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에 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피해자가 이를 부담하지만, 고도의 기술이 집약되어 대량으로 생산되는 제품의 경우 제품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결함의 존재·그 결함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한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의 제조물책임법이 제정되어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이 법은 종전의 판례 이론과 각국의 입법례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법 제2조는 종전의 판례가 정의한 바대로 제조물책임의 핵심적인 요건인 제조물의 결함을 규정하고 있을 뿐, 결함의 존재 및 손해와의 인과관계의 입증을 법원의 판단에 맡기고 있으므로, 이후에도 판례는 지금까지와 마찬가지 경향을 보일 것으로 판단된다.

## <제조물책임 관련판례>

### 배합사료로 인한 닭 폐사 사건 (1977.1.25. 75다2092 손해배상 판결)

[사건 개요] 원고는 1963. 3.경부터 ○○부화장이라는 상호로서 대구시 북구 ○○동 대지 900평 위에 총 건평 320평의 부화장을 세워 부화기 23대 및 기타 필요장비를 갖춘 양계용 병아리 부화장을 운영하는 한편으로 대구시 북구 ○○동 대지 8,500평에 총 연건평 1,818평에 달하는 18동의 계사와, 실험실, 창고 등 부속시설 및 장비를 갖추고 부화 용 종란을 생산하기 위한 유색 및 백색하이라인, 세미부로이라 등 종계 약 25,000여 수와 식용란의 생산을 위한 산란계 10,000여수를 사육하는 대규모의 양계업을 경영하면서 소외 ○○사료공장으로부터 양계용사료(배합사료 및 기초사료)를 매입하여 급식시켜 오다가 1972. 11.경 소외 정○○의 소개로 대구시 북구 ○○동에 소재하는 ○○사료공장을 알게되어 그해 11. 13.부터 12. 2.까지 사이에 종계용 기초사료 도합 47톤을 매입하여 종계 전종류에 급식시켰으나 아무 탈이 없기에 같은 해 12. 14.경 위 ○○사료로부터 산란A-1, 크로바 특-1란 이름의 사료로서 사료성분보증표까지 붙은 완전배합사료 2종과 종계용 기초사료 2종 각 10톤씩 도합 40톤 가량을 매입하여 같은 달 20경부터 원고양계장의 케이지계사에 사육중이던 백색하이라인 채란노 계 5,600수와 12호 계사에 사육 중이던 백색하이라인 채란신계 4,400수에 대하여는 위 ○○사료 중 배합사료에 물만을 태워서 급식시키고, 1호 계사에 사육 중이던 유색 하이라인 원종인 종계 900수와 8, 9, 11호 각 계사에 사육 중이던 백색하이라인 원종 인 종계 6,276수와 5,14호 각 계사에 사육 중이던 세미부로이라 종계 4,660수에 대하여는 위 ○○사료의 기초사료에다 종래까지 원고가 급식해오던 방식에 따라 옥수수, 대두박, 밀기울, 들깨박, 참깨박 등 단미사료와 어분, 번데기, 고추씨박, 채송박, 옥태박, 폐분등 첨가사료를 배합하여 이를 급식하는 등 그 급식방법이나 계사관리 및 사료보관에 아무런 이상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급식한지 3,4일 후부터 계사당 1일 약 80%정도의 산란율을 보이던 건강한 닭들이 심한 탈모현상과 더불어 난 소가 극히 위축되고, 복강내 침출물이 충만되는 등 심한 중독현상을 초래하고, 산란율이 급격히 저하하기 시작하여 약 10일이 경과한 같은 해 12. 30.경에는 그 산란율이 약 30%이하로 떨어져 양계의 경제성이 완전상실하게 되어(산란율 40%이하가 되면 채란의 목적을 위한 양계는 그 경제성을 상실하게 되어 폐계로 처분하게 된다) 그 시경 위 채란용 하이라인 노계 3,800수와 신계 4,400수는 모두 폐계로 처분하고, 유색 및 백색하이라인 원종 및 세미부로이라등 종계는 원고경영의 부화사업의 유지를 위해 산란율 저하에 불구하고 계속 사육하려고 노력하였으나 끝내는 결국 모두 폐계로 처분하기에 이르자, 원고는 원고경영의 양계장에서 사육하던 위 닭들이 심한 중독현상을 나타내면서 산란율이 저하되어 폐계로 처분된 것은 오로지 위 닭들에 급식시켰던 ○○사료에 유독성이 있는 어떤 성분이 포함되어 있음에 기인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으로 제1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원고 모두 항소한 후, 다시 불복하여 상소한 사건을 대법원에서 2심대로 확정한 사건이다.

- [쟁점] 어떤 배합사료와 기초사료를 급식한 닭들에 난소협착증이 일어나고 산란율이 저하한 경우 위 사료에 어떤 불순물이 함유되었고 또 그것이 어떤 작용을 하여 위와 같은 결과를 초래한 것인지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은 채 적어도 그 사료에 어떤 불순물이 함유된 것이 틀림없다 하여 그 사료 제조판매자에게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판단]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 증거들을 취사선택하여 원고는 1972. 12. 14 경 피고가 경영하는 사료공장에서 그 판시와 같은 사료성분보증표까지 붙은 완전배합사료 2종과 종계용 기초사료 2종 각 10톤씩을 매입하여 자기양계에 급식한 바 그 3.4일 후부터 닭들이 심한 탈모현상과 더불어 난소가 극히 위축되고 복강내 침출물이 충만되는 등 심한 중독현상을 일으키고 계사당 매일 약80%에 달하던 산란율이 급격히 저하되기 시작하여 약10일이 경과한 무렵부터는 약30% 이하로 떨어져 양계의 경제성이 완전상실 되어 끝내는 모두 폐기처분하기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어서 제1심의 증거보전절차에서 감정인 이○○가 1973.7경 그간 원고가 보관하고 있던 위 배합사료와 기초사료로서 사양시험을 한 결과 원고의 양계장에서 나타난 바와 똑같은 시험결과를 보였고 그 즈음 같은 양계업자인 소외 양재열의 수명도 피고 공장으로부터 구입한 배합사료와 기초사료를 닭들에 급식한 결과 같은 현상을 나타내어 결국 모두 폐기처분하고 말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아울러 원고의 급식 방법이나 계사관리 또는 사료보관에 어떤 이상이 없었고 위 감정인이 사양시험에 제공했던 사료들이 변질되거나 부패한 것도 아니고 또 원고가 이 사건 사료를 급식할 무렵 닭들에게 뉴켓슬 예방주사를 시주한 바는 있었으나 그 시주방법이나 약품에 아무런 하자도 없었다는 사실까지를 인정하고 있는 바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위 인정사실이 충분히 공인되는 바이고 위 사양시험의 결과나 원심채택의 증인들의 각 증언을 믿을 수 없다 하여 배척하여야 할 합리적인 이유도 발견되지 않는 바이니 여기에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비록 본건 사료에 어떠한 불순물이 함유되어 있고 또 그것이 어떤 화학적 영양학적 내지는 생리적 작용을 하여 이를 사료로 한 닭들이 위와 같은 난소협착증을 일으키게 되고 산란율을 급격히 현저하게 저하케 한 것인지는 이 사건에서 구체적으로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그 사료에 어떤 불순물이 함유된 것이 틀림없어 제조과정에 과실이 있었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사육하던 닭들이 위와 같은 현상을 초래하게 된 것이라는 이론과 인과관계는 입증되었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

에서 원심이 그 사료제조 판매자인 피고에게 불법행위의 책임을 인정하였음은 정당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심판단에 소론과 같은 불법행위의 책임이나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이 사건에서 위 사료에 어떤 불순물이 포함되어 있었는지를 더 이상 구체적으로 조사하여 밝혀지지 않았다고 해서 심리 미진의 위법이 있고 공격될 수도 없다.

[기 타] 배합사료와 기초사료에 어폐한 불순물이 함유되었고 또 그것이 어떤 화학적 영양학적 내지는 생리적 작용을 하여 이를 사료로 한 닭들이 난소협착증을 일으키고 산란율을 급격 현저하게 저하케 한 것인지는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았어도 위 사료로서 사양시험을 한 결과 똑같은 시험결과를 보였고 급식방법이나 계사관리 또는 사료보관에 어떤 이상이 없었고 사양시험에 제공했던 사료들이 변질되거나 부패한 것도 아니고 또 이건 사료를 급식할 무렵 닭들에 시주한 뉴캐슬 예방주사의 시주방법이나 약품에 아무런 하자도 없어 적어도 그 사료에 어떤 불순물이 함유된 것이 틀림없어 제조과정에 과실이 있었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사육하던 닭들이 위와 같은 현상을 초래하게 된 것이라는 인과관계의 입증을 인정(인과관계에 대한 사실상의 추정)하고 사료제조 판매자에게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한 사례이다.

본 사건은 연구시험 및 그 결과의 보존, 제조상의 철저한 품질관리의 필요성을 일깨워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이 사건에서는 결함의 존재와 인과관계에 대하여 사실상의 추정으로 제조자의 책임을 인정하였으나 결함이 특정되지 않았으므로 제조자가 제품의 안전성에 관하여 미리 테스트를 실시하고 그 데이터를 보존하고 있었고, 철저한 품질관리를 하였다면 그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었을 것이다.

#### 학교급식 O-157 식중독 여아 사망 사건(오오사카지방재판소 사카이지부 평성 9년 (7) 28호)

[사건 개요] 소학교 6년의 여아(원고들의 딸)가 사카이시(피고)가 설치·관리하는 학교에서 급식을 먹은 후, 병원성대장균 O-157에 감염되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자, 그 부모가 사카이시를 상대로 제조물책임법 제3조, 민법상 채무불이행책임, 국가배상법 1조 내지 헌법 29조 3항의 유추적용에 근거한 책임 등을 원인으로 7,770만엔을 요구하며 1997년 1월 17일에 제소한 사건이다.

[쟁 점] 사망사고의 원인이 피고들의 과실에 의한 것인지 여부.

[판 단] 학생 집단 설사증은 피고의 3분의 2의 지역에서 발생하고 증상이 있는 자의 대부분이 학생인 점 등 발생태양에서 보면 직접적인 원인으로 수도 학교급식을 생각할 수 있다는 것과 더불어 부에서 관리운영(府營)하는 수도가 부 아래 다른 시와 마찬가지로서 전역에 공급되고 있다는 것, 저수조(물탱크)의 설치유무에 관계없이 발생학교가

분포하고 있다는 것, 7월초에 대규모의 수도공사가 행해지지 않았다는 것, 잔류염 소농도의 조사결과에 잘못이 없다는 것 등의 사실에서 수도는 원인이었다고 생각하기 어렵고 증상이 있는 자와 입원자의 발생상황 발생일 등에서 학교급식에 기인한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상당하다. 더욱이 급식일과 식단을 원인으로 추정할 수 있는데 가장 의문시되는 식단에 포함되어 있던 공통의 비가열 식재는 카이와레무이며 어떤 오염경로를 거쳐 오염되었는가에 대해서 특정하기에 족한 정확한 증거는 없으나 원인물질로서는 가장 가능성성이 높다.

특히 학교 급식은 .....학교교육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것이며 당해 학교에 재학하는 모든 아동 또는 생도에 대해 실시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문부성도 학교급식에 대해서는 전원 일률적으로 방침을 취하고 있고 사카이시에서도 알레르기인 아동 등을 제외하고 재학하는 아동전원에게 급식을 먹을 것을 지도하고 각 소학교를 통해 아동에 대해 가능한 한 모든 급식을 먹도록 지도하고 있었던 것으로부터 보면 아동으로서는 점심으로 학교급식을 먹는 이외의 선택의 여지는 없고 학교에서 제공된 급식을 점심으로서 그 안전성에 어떤 의문을 품지 않은 채로 먹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고 하여 아동 측에는 이를 먹지 않을 자유는 사실상 없으며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 이므로 극히 고도의 안전성이 요구되는 것이며 식중독 등의 사고가 일어나면 결과적으로 급식제공자의 과실이 강하게 추정된다고 판시하였다.

O-157에 대한 예방조치를 위한 통달과 보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다른 많은 시정촌은 식단을 가열조리로 대체하고 있었다는 것 등으로부터도 피고 및 학교급식의 실시관리에 종사하고 있던 피고의 소속부 직원에게는 불법행위(국가배상법)에 의한 과실이 있다고 하여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여 5,430만엔의 지급을 명했다.

- [기 타] 1999년 9월 10일 220쪽을 넘는 판결문에 의해서 원고 승소의 판결을 언도한 사건으로 비록 제조물책임법으로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원인물질의 특정 등의 엄격한 입증을 요구하지 않은 판례라 할 수 있다.

[기타 일본의 PL소송 일람]

사건명	제소일자	판결/화해	원고	피고	소송액	사건 개요(원고주장)
종이팩 용기 부상사건	95. 12. 24. 99. 9. 22. 항소	99. 9. 8. 판결 청구 기각 00. 2. 29. 항소 기각	레스토랑 경영자	스트레이트Tea 제조메이커 팩 제조사	91만엔	원고가 영업용 스트레이트Tea를 열 때에, 그 추출구에서 원손 엄지에 면도기로 자른 것 같은 길이 15밀리 짚이 1~2밀리의 상처를 입었다.
컷베이컨 식중독 사건	96. 11. 18.	98. 6. 18. 화해	정체료술사	식품제조 회사	95만엔	빠찡코점의 경품으로 받은 컷베이컨을 먹었는데, 푸른곰팡이가 원인으로 발진과 설사증상을 초래했다.
학교급식 O-157 식중독 사망사건	97. 1. 16.	99. 9. 10. 판결 확정	사망한 여아의 부모	지방공공 단체	7770만엔 인용액 4537만엔	병원성대장균 O-157에 오염된 학교급식을 먹은 여아가 사망했다.
생성계 식중독 사건	97. 1. 22. 97. 4. 10. 97. 6. 5. 병합	99. 2. 25. 청구기각 확정	음식점 경영회사 식품제료납 입동족회사	식품수입 회사 수산물 도매회사	3495만엔	원고의 음식점에서 생성계를 먹었는데, 손님 25명이 장염비브리오균에 의한 식중독에 걸렸다.
이물흔입 주스로 후두부 부상사건	98. 5. 15. 99. 7. 13. 항소	99. 6. 30. 판결 00. 5. 10. 화해	상처입은 여성	음식물 제조 판매 회사	40만엔 인용액 10만엔	점심식사용으로 햄버거와 오렌지 주스를 사서 회사에 돌아와 친구와 함께 먹었다. 주스를 빨대로 마시기 시작했는데, 주스 속에 있던 이물로 목을 다치고 구토했다.
곤약젤리 사망사건	98. 10. 30.	01. 2. 23. 화해	사망한 남아의 부모	식품 제조 판매 회사	5945만엔	곤약이 들어있는 젤리에 인후두가 막혀서 질식사했다.
수입병 올리브 식중독 사건	99. 2. 15. (제1사건) 00. 2. 1. (제2사건) 00. 11. 28. (제3사건) 3사건 병합 (병합일불명)	01. 2. 28. 판결 확정	레스토랑 손님, 종업원, 경영자,레스 토랑 (법인)	올리브 수입회사, 레스토랑경영 자(제1사건)	1470만엔	이태리레스토랑에서 그 손님, 종업원, 경영자가, 이태리에서 수입한 병 올리브를 먹고, B형 보트리루스균에 의한 식중독을 일으킴.

[기타 일본의 PL소송 일람 계속]

사건명	제소일자	판결/화해	원고	피고	소송액	사건 개요(원고주장)
컵면 이물흔입 복통, 설사 등 사건	00. 6. 6.	00. 12. 26. 화해	컵면을 먹은 남성	컵면 제조회사	99만엔	컵면에 혼입된 이물에 의 해서 몸상태가 나빠져, 제 조회사가 조사한바, 바퀴 벌레알로 판명, 병원에서 정밀조사 과정에 인플루 엔자에 걸리는 등 피해를 입음.
병들이 야채주스 설사증상사 건	01. 1. 26.		병들이 야채주스를 마신 가족 3인	병들이 야채주스 제조회사	660만엔	저녁 식사 후, 가족3인이 병들이 야채주스를 마셨 는데, 곰팡이 같은 이물이 있었기 때문에, 기분이 나 빴고, 설사증상이 수일 계 속됨.
저지방 우유 등 식중독 사건	01. 7. 12.		식중독을 일으킨 4가정 6인	유제품 제조회사	6614만엔	저지방우유 등을 마시고, 설사 등 식중독 증상이 생 기고, 그 중에는 심적외상 후스트레스(PTSD)에 빠 지는 등 정신적 고통을 당 함.